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탈퇴·제명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 환급규정 현실화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2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등 환급규정 현실화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 탈퇴 및 제명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은 매년 총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하여 현실에서는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탈퇴·제명 조합원에게 출자금이 환급되고 있으며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은 조합원 탈퇴·제명과 별개로 예적금 계약에 따라 지급·해지하고 있어 현실과 현행법상 괴리가 발생함.

이에 탈퇴·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Ⅲ. 검토의견: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등 환급규정 현실화

- 개정안은 탈퇴·제명 조합원에 대한 ① ‘예탁금 및 적금’ 환급 규정을 삭제하고 ② ‘출자금’ 환급의 경우에는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u>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 ① ----- -----그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출자금----- -----.

- 현행법¹⁾에 따라 조합의 공동유대²⁾에 소속된 자는 출자금을 납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들 조합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조합에 대한 의무 불이행 시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음.

1)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제16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제18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자가 1좌 미만인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2)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함(「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

-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현행법 제17조제1항³⁾은 지체없이 그의 ‘출자금’ 및 ‘예탁금·적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탁금·적금’의 경우, 현행법 제40조제1항⁴⁾에 따라 비조합원도 동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 탈퇴·제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만기까지 그대로 ‘예탁금·적금’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출자금’의 경우에는, 2015년 7월 시행된 현행법 제17조제2항⁵⁾에 따라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그 출자금 환급 시에 해당 탈퇴·제명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해당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조합 재산·채무 확정)되고 나서야 출자금 환급이 가능한 실정임.

3)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4)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이하 생략)

5)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부칙 <제13067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의 탈퇴·제명과 ‘예탁금·적금’ 환급의 연관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과 실제 운용 간의 괴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참고로,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출자금 환급 규정 역시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호금융업권 출자금 환급 관련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u>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u>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u>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u>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u>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u>	제10조(탈퇴 등) ⑤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u>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u>

문 의 처

02)6788-5113